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7.

발 의 자 : 김선교 · 박덕흠 · 박수민
김상훈 · 서천호 · 김위상
이헌승 · 최보운 · 김성원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학교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학교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에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.

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‘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’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,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,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.

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,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

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).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농수산물”을 “농축수산물”로, “급식시설”을 “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 및 급식시설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지역 내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경비부담 등) ① ~ ③ (생략)	제8조(경비부담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<u>농수산물</u>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<u>급식시설 · 설비의 확충</u> 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·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축수산물</u> ----- ----- <u>지역</u> <u>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</u> <u>용 및 급식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0조(식재료)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<u>한다</u> .	제10조(식재료) ① ----- ----- ----- <u>하고, 지역 내</u> <u>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</u> <u>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</u> 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